

군포도시공사 제1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취업규정」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 희



2021년 1월 21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64호

군포도시공사 취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

군포도시공사 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. 다만, 공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와 차년도로 이월(저축)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2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제3항의 저축기간은 연차 발생일(예시: 2021년 1월 1일)을 기준으로 3년(예시 2023년 12월 31일)으로 하며 최대 저축가능일수는 20일로 한다.

제2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제4항의 기간 내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연차저축에 의한 연차 발생 기준연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

적용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기 획 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기 획 부 장 이 현 동
	직 위 성 명	경 영 전 략 팀 장 박 인 희
	담당자 성명 (전 화)	이 태 권 (390-7615)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(연차유급휴가) ① <생략> ② <생략>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. <u>다만, 공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 <신설> <신설>	제28조(연차유급휴가) ① <현행과 같음> ② <현행과 같음> ③ ----- ----- ---- <u>다만, 공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와 차년도로 이월(저축)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 ④ <u>제3항의 저축기간은 연차 발생일(예시: 2021년 1월 1일)을 기준으로 3년(예시: 2023년 12월 31일)으로 하며 최대 저축가능일수는 20일로 한다.</u> ⑤ <u>제4항의 기간 내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.</u>